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9. (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6. 8. 21.

○ 회부일 : 2026. 8. 24. (의안번호 : 26 - 90)

2. 제안이유

○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경의선 책거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책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의적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써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필요
- 위탁자는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탁자는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경제성 증대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경의선 책거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경의선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 경의선 책거리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

○ 조직·인사관리·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등

○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위치: 와우산로35길 50-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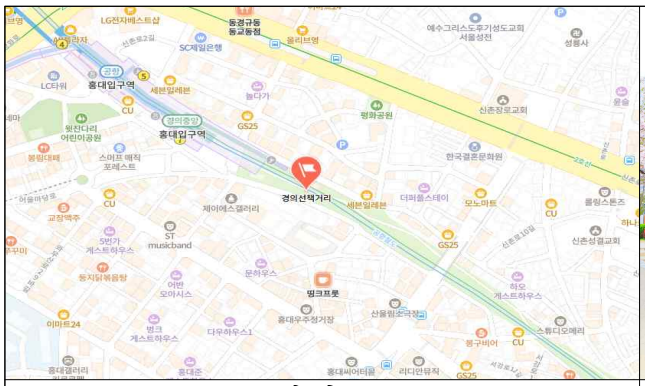
○ 조성년도: 2016년

○ 사업규모: 6,411㎡

○ 세부시설

구분		면적	용도	비고
본부동	1층	150.61㎡	커뮤니티센터, 개방화장실	
	2층	149.50㎡	운영사무실, 다목적실	
부스동	1동	25.29㎡	입주사 부스	임대 운영
	2동	25.29㎡		
	3동	25.29㎡		
	4동	25.29㎡		
	5동	52.27㎡		
	6동	25.29㎡		
	7동	52.27㎡		
	8동	85㎡	홍보관 및 갤러리	
		28.33㎡	공실	
	9동	25.29㎡	부스(방송전용)	
광장		-	-	
와우교 하부		-	옛 역 부지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마. 민간위탁기간: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연간): 41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
인건비 (3명)	130,000	급여, 유급휴가수당, 퇴직연금부담금, 4대보험료 등
운영비	100,000	사무관리비(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제세공과금) 등
시설비	30,000	공간 보수 등
사업비	150,000	문화사업, 교육사업, 독서활성화산업, 네트워크사업 등
합계	410,000	

※ 단, 위탁예산은 인건비, 시설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5. 검토보고

1 민간위탁의 적정성

○ 본 동의안은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의 특성상 단순 시설관리뿐 아니라 책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행사 기획,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전문적·창의적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특히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인력운용 및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단순히 민간이 전문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영과 민간위탁 간 비용·인력·전문성·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수탁기관선정시 중요사항

○ 시설물 및 안전관리

- 경의선 책거리는 다수의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인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관리가 중요함.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 시 시설관리 능력 및 안전관리 계획을 평가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시설물 정기점검, 안전사고 예방, 보험가입,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에서 가격이나 사업비 절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6. 종합검토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설립, 시행하는 '경의선 책거리' 사업을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작성,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사업의 위탁)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 경의선 책거리 전반의 관리·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경의선 책거리 조성시기는 2016년 4월이며 이후 마포구는 동 시설의 운영을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이 운영한다고 했지만 수탁기관의 단체장이 교체될 때 마다 지속성이 없는 행정으로 운영 능력이 퇴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정책의 연속성으로 경의선 책거리문화와 책이 어우러지는 책거리를 만들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320호, 2020. 7. 9., 일부개정]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

· 수수료 ·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1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793호, 2025. 9. 18.,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